

평생건강, 국민행복
글로벌건강보장 리더

인공호흡기 영양비 확대 관련 질의·응답

- 영양기관용 -

h·well
국민건강보험  급여보장실

순서

1. 인공호흡기 요양비 등록 관련

- Q1. 인공호흡기 요양비 등록 대상자는?
- Q2. 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?
- Q3. 인공호흡기 요양비 적용 시기는?
- Q4. 등록신청서의 진단확인일은 언제인가요?
- Q5. 등록대상자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Q6. 등록 신청일은 언제 인가요?
- Q7. 환자등록 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타상으로 판명 되었을 경우 또 신청해야 하나요?
- Q8. 등록신청서의 신청인은 반드시 환자 본인만 해당 되나요?
- Q9. 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?
- Q10. 요양기관은 환자 등록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- Q11. 환자는 등록신청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- Q12. 등록신청서 후 변경 및 해지 신고 시 신청절차는?
- Q13.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던 사람도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- Q14.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비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환자의 경우 언제부터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가요?
- Q15. 등록신청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?

2. 인공호흡기 검사항목 및 진단기준 등 관련

- Q1. 등록 시 상별별 검사항목은?

순서

- Q2. 상병별 검사항목과 진단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- Q3. 상병별 진단을 위한 검사는 꼭 해야 하나요?
- Q4. 등록 시 임상증상 확인 및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도 해야 하나요?

3. 인공호흡기 처방전 작성 및 발급 관련

- Q1. 처방전은 누가 발급 하나요?
- Q2. 처방전의 처방기간은?
- Q3.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?
- Q4. 처방전 발급 기준과 처방항목은?
- Q5. 최초 처방과 재 처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?
- Q6. 급여대상자 등록 시 검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초 처방전 발급을 위해 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
- Q7. 처방기간과 다음 처방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?
- Q8. 인공호흡기 환기타입은 왜 처방하나요?
- Q9. 계속 인공호흡기 요양비를 지급 받으려면 재 처방전은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요?
- Q10. 인공호흡기 처방전이 아닌 일반 처방전도 가능한가요?
- Q11. 국고지원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나요?
- Q12. 제도시행일 이전에 자비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환자도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나요?
- Q13. 대상자 등록 전에 발행한 처방전도 인정하나요?

순서

Q14. 처방전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?

Q15. 처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 유효기간은?

참고 : [인공호흡기 요양비 관련 처리 절차]

4. 기타

Q1.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
요양비 지급이 가능한가요?

- 별첨
1.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 대상 상병
 2. 상병별 검사항목 및 진단기준

☎ 문의처 : 보건복지부 129,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인공호흡기 요양비 확대 관련 질의·응답

1.

인공호흡기 요양비 등록 관련

Q1-1

인공호흡기 요양비 등록 대상자는?

- 「요양비의 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-231호, 2015.12.23) [별표4의2]에 고시된 상병으로,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,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 받은 사람입니다.

Q1-2

등록신청서는 누가 발급하나요?

- 「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」는 신경과·신경외과·재활의학과·내과·결핵과·흉부외과 전문의가 발급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) 가능하며 등록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과의 담당의사의 자필 서명(날인) 및 요양기관 직인이 필요합니다.

Q1-3

인공호흡기 요양비 적용시기는?

-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기기적용 테스트가 완료되어 최종 확정된 날을 **요양비 적용시작일로 산정 함**
- 인공호흡기 요양비 적용 절차: 환자 진료 후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→ 처방전 발급 → 인공호흡기 기기적용 테스트 후 최종 확정 →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‘표준계약서 작성’ 후 환자 및 업소가 각 1부씩 보관

Q1-4

등록신청서의 진단확인일은 언제인가요?

○ 진단확인일은 인공호흡기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등록신청서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서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담담의사가 “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로 확진한 날” 을 말합니다.

※ (해당상병 최초 진단일과 해당상병으로 인해 인공호흡기 급여가 필요하다고 확진한 진단확인일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)

Q1-5

등록대상자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○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기준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방법1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nhis.or.kr>) → 요양기관 정보마당(<http://medi.nhis.or.kr>) → 요양기관 공지사항 →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방법안내

(방법2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nhis.or.kr>) → 사이버민원센터 → 건강보험 안내 → 보험급여 → 보험급여 → 23.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 → ※인공호흡기 상병별 진단기준 및 검사항목

Q1-6

등록 신청일은 언제 인가요?

○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일은 「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등록 신청서」와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한 날입니다.

- 방문 :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날

- 우편 : 우편소인이 찍힌 날

- FAX : 공단에 FAX 접수된 날

Q1-7

환자 등록 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타 상병(인공호흡기 급여대상 상병)으로 판명 되었을 경우 또 신청해야 하나요?

○ 기존 등록된 상병 외에 타 상병이 중복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등록은 하지 않으며 다만, 기존상병이 판정오류 등으로 변경 된 경우에는 기존 상병은 해지하고 정확한 상병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.

Q1-8

등록신청서의 신청인은 반드시 환자 본인만 해당 되나요?

○ 신청인은 환자 본인이지만, 「민법」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단, 신청서 하단의 개인정보 제공동의 관련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고, 수진자가 행위무능력자일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5조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동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1-9

등록신청 방법과 구비서류?

○ 담당의사로부터 「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등록신청서」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로 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.

- 구비서류: ①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「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」, ②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

※ 등록신청서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nhis.or.kr>) → 사이버민원센터 → 건강보험안내 → 보험급여 → 보험급여 →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

- 신청방법: 방문, 우편 또는 FAX (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제출)

※ 단, FAX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*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

(수진자가 미성년자 본인일 경우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, 신청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)

Q1-10

요양기관은 환자 등록여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○ 요양기관에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대상자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☞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nhis.or.kr>) → 요양기관 정보마당(<http://medi.nhis.or.kr>) → 회원서비스 →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조회(맨 하단)

※ 대상자 등록신청서 및 처방전 서식 및 등록대상 상병, 검사항목 및 진단기준 조회가능

Q1-11

환자는 등록신청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- 공단에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‘등록결과통보(SMS) 란에 예’ 로 체크 된 경우 수진자가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발송 해드립니다.

Q1-12

등록신청 후 변경 및 해지 신고 시 신청절차는?

- 「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변경 및 해지 신고(신청서)」에 수진자 정보, 변경 및 해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공단 지사(출장소포함)에 방문 또는 FAX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(양식 별첨)

Q1-13

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공호흡기 대여료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던 사람도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나요?

- 질병관리본부장이 실시하는 ‘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’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지원받던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공단에서 일괄등록 해드립니다.

Q1-14

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비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환자의 경우 언제부터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가요?

- 제도시행 이전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환자의 경우 ‘ 16.1.30.일까지 해당 검사 후 등록신청서(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)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’ 16.1.1.일에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.

※ 제도시행 이전에 업소와 계약한 인공호흡기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

Q1-15

등록신청서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?

- 등록 신청서 발급비용을 없습니다. 다만, 등록신청 시 진단을 위해 실시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.

2.

인공호흡기 검사항목 및 진단기준 등 관련

Q2-1

등록 시 상병별 검사항목은?

- 검사항목은 ①영상검사, ②특수생화학/면역학검사,도말/배양검사, ③유전학 검사, ④조직학검사, ⑤임상진단(소견), ⑥기타 특수검사가 있으며, 각 상병별로 해당하는 검사항목이 다릅니다.

※ 상병별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만 실시하도록 검사항목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, 상단의 검사항목에 대한 결과지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습니다.

Q2-2

상병별 검사항목과 진단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-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시 필요한 진단기준 및 검사항목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방법1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nhis.or.kr>) → 요양기관 정보마당(<http://medi.nhis.or.kr>) → 요양기관 공지사항 →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방법안내

(방법2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nhis.or.kr>) → 요양기관 정보마당(<http://medi.nhis.or.kr>) → 회원서비스(하단) → 인공호흡기 요양비 대상자 조회

(방법3)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nhis.or.kr>) → 사이버민원센터 →건강보험 안내 → 보험급여 → 보험급여 → 23.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 → ※인공호흡기 상병별 진단기준 및 검사항목

Q2-3

상병별 진단을 위한 검사는 꼭 해야 하나요?

- 해당상병으로 인해 인공호흡기가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요양비를 지원하므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.

Q2-4

등록 시 임상증상 확인 및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도 해야 하나요?

- 등록 시 임상증상 확인 및 이산화탄소 분압검사까지 급여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다만, 소아환자 또는 의식저하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증상 진단은 제외 가능하며,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어 임상증상이 없고 인공호흡기를 이탈하여 이산화탄소 분압검사가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.

3.

인공호흡기 처방전 작성 및 발급 관련

Q3-1

처방전은 누가 발급 하나요?

- 인공호흡기 처방전은 신경과 · 신경외과 · 재활의학과 · 내과 · 결핵과 ·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급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포함) 가능하며, 처방전에는 반드시 해당과의 담당의사 자필 서명(날인)과 요양기관 직인이 필요합니다.
 ※ 처방전 발급 시 검사결과지(또는 의사소견서)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
 (단, 최초 처방 시에는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검사결과지 등으로 대체 가능)

Q3-2

처방전의 처방기간은?

- 최초처방은 6개월(180일)이내, 재 처방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당 의사가 판단하여 처방 가능합니다.

Q3-3

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?

-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(<http://medi.nhis.or.kr>)에서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 ※ 확인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://nhis.or.kr>) → 요양기관 정보마당(<http://medi.nhis.or.kr>)
 → 회원서비스(하단) → 인공호흡기 요양비 대상자 조회
 자격조회 시 등록여부와 등록일만 표시됩니다.

※ (예시) 등록된 경우 : 등록일 YYYY-MM-DD

단, 미등록자는 인공호흡기 대상 자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

-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 안내 및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Q3-4

처방전 발급 기준과 처방항목은?

- 공단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상 고이산화탄소혈중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고 담당 의사가 진단한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
- 처방전에 처방기간과 다음 처방일을 기재하고, 인공호흡기 환기타입도 함께 처방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 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.

Q3-5

최초 처방과 재 처방은 어떻게 구별하나요?

- 최초처방은 건강보험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로 등록 후 처음 발급한 처방전을 말하며, 이후에 임상증상 진단 및 검사 등을 실시하고 발급한 처방전은 모두 재 처방에 해당됩니다.

Q3-6

급여대상자 등록 시 검사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최초 처방전 발급을 위해 또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?

- 이미 등록된 사람의 경우 최초 처방 시에는 별도검사 없이 처방전만 발급받아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.
- 단, 재 처방 시에는 임상증상 진단 및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를 실시하고 처방전과 함께 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
Q3-7

처방기간과 다음 처방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?

- 최초 처방과 재 처방의 처방기간이 다르고, 재 처방의 경우 2년의 범위에서 담당의사가 처방기간을 정할 수 있어 반드시 처방기간과

다음 처방일을 기재하여 환자가 다음 진료일을 알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
Q3-8

인공호흡기 환기타입은 왜 처방하나요?

- 담당의사가 환자상태에 따라 환기타입을 처방하여 적정 설정 값을 주어 이산화탄소 농도 등 환자의 적절한 환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담당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가 임의로 설정 값을 변경하여 위급 상황에 노출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

※ 인공호흡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환기상태가 유지되지 못해 치명적인 호흡기계 합병증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.

- 따라서 사용 중인 인공호흡기의 환기타입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.

Q3-9

계속 인공호흡기 요양비를 지급 받으려면 재 처방전은 언제 발급 받아야 하나요?

- 처방기간이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재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지급 청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.
- 공단에서는 환자가 제때에 처방전을 발급받지 못해 요양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방기간 종료 180일전과 90일전에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.

※ 환자 등록 신청서에 기재한 휴대전화 번호로 SMS 문자 안내

☞ 예시 : 000님, 인공호흡기의 처방기간 종료일은 YYYY-MM-DD. -국민건강보험-

Q3-10

「인공호흡기 처방전」이 아닌 일반 처방전도 가능한가요?

-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[별지 제2호의2]서식 「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」으로 발급 받아야만 요양비 적용이 가능합니다.

Q3-11

국고지원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나요?

- ‘희귀난치의료비지원사업’에서 인공호흡기를 지원받기 위해 보건소로 제출한 처방전에 처방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처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 처방전을 발급받아 요양비지급 청구 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단, 보건소로 제출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6.1.1.~2017.12.31.까지(2년간) 처방기간이 인정되어 2018.1.1.일까지 재 처방전과 검사결과지(또는 의사소견서)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
Q3-12

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비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환자도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나요?

- 제도시행 이전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환자도 진료 후 [별지 제2호의2]서식 ‘건강보험 인공호흡기 처방전’ 과 검사결과지(또는 의사소견서)를 발급받아 요양비지급 청구 시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
Q3-13

대상자 등록 전에 발행한 처방전도 인정하나요?

- 인공호흡기 대상자 등록 전에 발행한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행일(2016.1.1.)이후 같은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 당일 처방전도 인정합니다.

Q3-14

처방전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?

- 별도의 처방전 발급비용은 없습니다. 다만, 처방전 발급 시 진단을 위해 실시한 진찰 및 검사료는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.

Q3-15

처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 처방을 받은 경우 처방 유효 기간은?

- 제도시행 후 인공호흡기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상증상 진단 및 이산화탄소 분압검사 후 재 처방을 받은 경우, 최근에 발급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유효합니다.

4.

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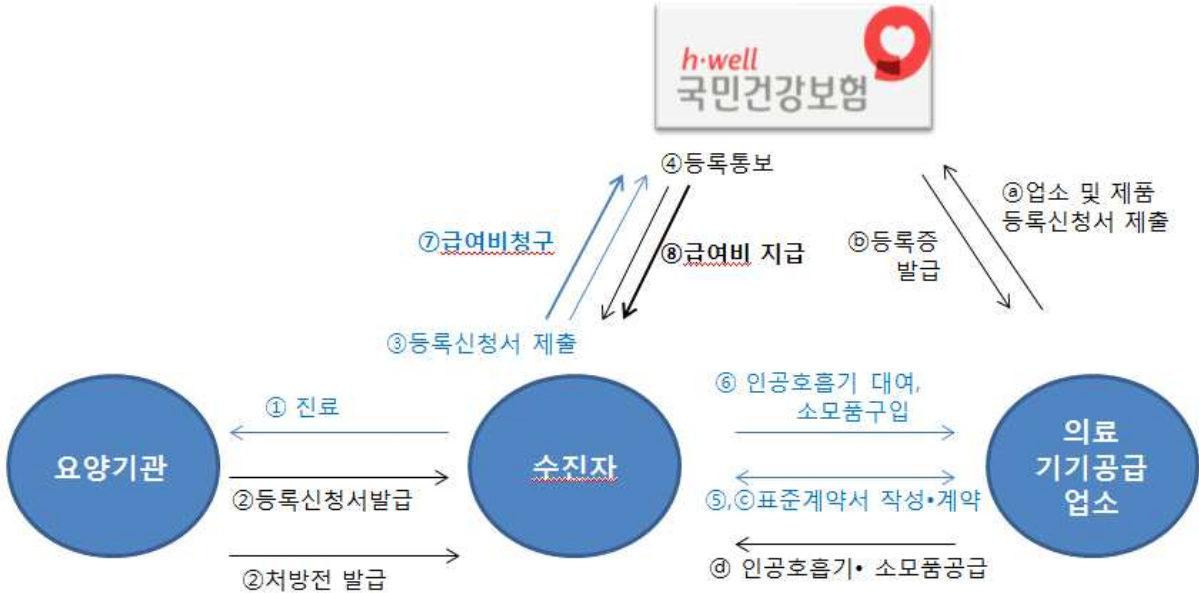
Q4-1

인공호흡기 요양비를 지급받던 사람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요양 병원에 입원한 경우 요양비 지급이 가능한가요?

- 인공호흡기 요양비를 지급받던 사람이 질병 등으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달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요양비 지급이 가능합니다.

※ 단, 요양급여비와 요양비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

참고 : [인공호흡기 영양비 관련 처리 절차]



♣ 수지자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에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로 지급

* 위 Q&A는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,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☎ 문의처 : 건강보험공단 1577-1000